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80호)

2026.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안 제79조 제2항제16호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개호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9.

다.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융자·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III. 검토의견

1.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 (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현 행	개 정 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 <u><신 설></u>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 -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육성 ·확충·정비 사업 등에 대한 출연· <u>보조 또는 융자</u>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지역지원계정은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동력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목적¹⁾으로 사용하고 있음.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의 의료기관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육성·확충·정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의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을 보임.

또한, 현행법 제19조²⁾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지역지원계정의 세출항목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육성·확충·정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 및 사업 등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의 세출 사업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의 중복 우려가 있음.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따라 설치하려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인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지원에 필요한 경비,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기반 확충에 필요한 경비,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개정안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에 규정하려는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지역지원계정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육성·확충·정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하는 경우, 향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설치 여부를 고려하여 동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차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획예산처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세출항목에 지역 보건의료 확충사업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둘째,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법률상 통일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육성·확충·정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 취약지역과 동일한 뜻으로 볼 수 있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의료 취약지역을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 략) <u><신 설></u> 16. (생 략)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 16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5. (현행과 같음) 16. <u>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u> <u>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력·의료</u> <u>기관의 육성·확충·정비 사업</u> <u>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u>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③ -----제7호까지, 제16 <u>호 및 제17호에</u> ----- -----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 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 등 가. (생 략)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 호에 따른 출연·보조·용자 및 지원 등 다. (생 략)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10호, 제16호 및 제17호에----- ----- 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호, 제7 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 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 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 ----- -----제 16호, 제17호에-----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2